

연구결과 세부내용

1 연구 개요

- 연구 단체명 : 울주자치법규연구회
- 구 성 원 : 5명(회장:최길영, 간사:노미경,
회원:김영철, 박기홍, 한성환)
- 연구 과제명 : 울주군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·용역
「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중심으로」
- 주요 내용
 - 위탁 관계 조례의 법령 적합성 여부 검토
 - 조례에 내재된 법령 불합치 및 입법 미비 사항 다각도로 결과 도출
 - '우선적 정비대상 조례' 전수·조사 후 정비방안 제시
 - 착수 보고회, 중간 보고회, 최종보고회 등 총 3회 진행

2 연구 결과

- 총 85개 사무의 위탁 관계 조례 가운데 37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상 위탁 근거가 없다는 연구 결과 도출
- 사무의 위탁 관계 조례 검토 결과, 다수의 조례에서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3항에 따라서 법인·단체, 개인에게만 사무를 위탁하는 실정임
-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수탁대상기관을 민간부문 외에 공공부문(공공기관·공공단체 등)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 기본조례를 재정비하여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
- 또한 「공유재산법」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 규정을 배제한 채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3항 및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위탁하는 등 상위법령을 오해 혹은 오인하여 상위법령과 불합치한 조례를 제정·운영하고 있음

- 사무의 위탁에 있어 행정재산이 혼용된 경우 위탁의 특례 규정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해당 위임조례인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개정 보완하거나 또는 가칭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본 조례」를 제정하여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절차·방법 및 사후관리 등을 체계적·통일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임
- 이외 조례 가운데 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, 공정성·투명성 등이 결여되는 사항, 위탁사무의 선정 단계에서 그 적용 범위가 모호하거나 불명확함 등 위법·부당성 등 지적
- 해당 연구 결과에 대하여 실·과·소별에서 법적 검토한 결과, 23개에 대하여 조례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함

3 추진 사항

- 2022. 10. 06. : 연구단체 설립
- 2022. 10. 21. : 연구용역 계약 체결 및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
- 2022. 12. 06. :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
- 2022. 12. 20. :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
- 2023. 01. 16. : 연구용역 최종 결과 보고서 송부
(의회 → 기획예산실)
- 2023. 2월 수시 : 실·과·소별 개별조례 불부합 등 검토
- 2023. 3월 수시 : 고문변호사 법률 및 울산광역시 법제 협력관 자문
- 2023. 05 ~ : 실·과·소별 검토사항 의회 보고 및 조례 재정비 진행

4 참고 자료

1. 울주군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·용역 최종보고서
2. 울주군 조례 속 위탁 조문 법령 불합치 등 검토보고서